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19가합109696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 독촉 사건]

전 문

원 고 1. A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B 주식회사

2. C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후

담당변호사 김연주, 류권영, 우상윤

피 고 D

변 론 종 결 2021. 12. 16.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23,089,351원 및 그중 각 1,499,040,466원에 대하여 2020.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99,040,4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과 C펀드(이하 ‘원고 펀드’라 하고, 원고 조합과 원고 펀드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0. 8. 12.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 조합과 원고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나. 원고들은 2016. 6. 1. 주식회사 E(2019. 5. 8. 주식회사 F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시점을 가리지 않고 ‘F’라 한다)와 사이에, F가 발행하는 기명식 종류주식 각 1,56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1,499,040,466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대금을 전액 납입하였는데, 피고는 F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G의 대주주 등으로서 위 신주인수계약에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였다.

위 신주인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3조(주식매수 청구 및 투자금 반환의 청구)

① 투자금 납입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원고들은 서면으로 F 및 피고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F 및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 보유 F의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매수 청구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은 본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6. 공인회계사의 F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한정인 경우

② 주식매수 청구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원고들이 투자한 원금과 투자일부터 주식매수 완제일까지 연 20% 복리계산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③ 본조 제1항에 의한 원고들의 주식매수청구는 F 또는 피고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F 또는 피고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제하여야 하고, 동 기간 내에 완제가 안 될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로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다. 외부감사인인 H회계법인은 F의 2017년도 재무제표에 관하여 ‘한정의견’을 제시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감사보고서는 2018. 4. 12. 공시되었다.

라. 원고 회사는 2018. 7. 2. 원고들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으로 피고와 F 등에 ‘H회계법인의 위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3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제출한 2020. 7. 10.자 및 2020. 10. 30.자 각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의견이 한정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였는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주식매수대금에 관하여 살펴 본다.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3조 제2항 제1호는 ‘투자금 원금 및 이에 대한 투자일부터 주식매수 완제일까지 연 복리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주식매수 청구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한편, 원고 회사는 원고들이 2020. 11. 3. 피고 등으로부터 각 742,857,143원을 지급받아 투자일인 2016. 6. 2.부터 2018. 11. 23.까지의 이자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1,499,040,46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마지막 충당일 다음 날인 2018.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여부 관련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3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F나 피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할 정도로 주된 채무를 위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F나 피고의 경미한 의무위반에 불과하므로, 위 신주인수계약 제33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3조 제1항의 문언은 명확하게 ‘공인회계사의 F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한정인 경우 원고들은 피고 등에게 원고들이 보유한 F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재무제표는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자료인데, F의 2017년도 재무제표와 경영 상태를 감사한 H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주요 재고자산이 누락되어 있고, 그 정확성을 검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정의견’을 제시한바, 위와 같은 재무제표의 부실은 F의 투자자인 원고들에 대한 경미한 의무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7조는 F가 투자일부터 4년 이내에 F의 주식이 코스닥 시장 등에 상장(기업공개)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F에 대한 한정의견 감사보고서의 공시는 위와 같은 상장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회계법인이 F의 2017년도 재무제표에 관하여 한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한 것은 투자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중대한 의무위반으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3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3조 무효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투자금 원금에, ‘투자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주식매수 청구금액으로 정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3조 제2항은 F의 다른 주주들에 비해 원고들에게만 우월한 이익을 부여한 규정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판단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회사인 F가 아니라,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연 20% 이자 미발생 관련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3조 제2항에서 주식매수 청구금액으로 원고들의 투자금 원금에 ‘연 복리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약정한 것인데, 피고의 주식매수 청구금액 지급의무와 원고들의 F 주식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에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F 주식을 반환하지 않아 피고는 주식매수 청구금액 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투자금 원금 외에 ‘연 복리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3조 제2항의 문언상 위 조항은 주식 매매대금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명백한 점,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3조 제3항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연

복리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연 20% 비율의 감액 관련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주식매수 청구금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투자를 받는 자는 투자자보다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점, 피고 등이 연대책임을 부담하여 그 지급의 담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투자금 원금에 고율의 이자를 복리로 가산하도록 정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액수는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3조 제2항의 문언상 위 조항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3조 제1항 소정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임이 명백하고, 달리 위 조항의 주식매수 청구금액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추가 변제 주장

원고들이 2020. 11. 3. 피고 등으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각 742,857,143원 외에도 피고 등이 같은 날 원고들에게 각 59,184,345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등이 추가로 변제한 각 59,184,345원은 2018. 11. 24.부터 위 변제일인 2020. 11. 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각 583,233,230원 중 일부에 충당되었으므로, 2020. 11. 3. 기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주식매매대금은 투자금 원금 각 1,499,040,466원과 2020. 11. 3.까지의 이자 중 잔존액 각 524,048,885원(= 583,233,230원 - 59,184,345원)의 합계액인 각 2,023,089,351원(= 1,499,040,466원 + 524,048,885원) 및 그중 투자금 원금 1,499,040,466원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 날인 2020.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가 남게 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원고 회사에 각 2,023,089,351원(= 1,499,040,466원 + 524,048,885원) 및 그중 1,499,040,466원에 대하여 2020.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창호, 판사 전희숙, 판사 조정용